

현안리포트

긴급점검, ACFTA 이후 ASEAN에서의 주요
수출상품 한·중·일 경쟁관계 분석

2005.8

海外調査팀

KOTRA

목 차

I. ACFTA 개요/1

1. 추진배경/1
 - 가. 중국 입장/1
 - 나. ASEAN 입장/3
2. ACFTA 개괄/6

II. ACFTA가 ASEAN에서의 한·중·일 주요 수출상품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9

1. 한·중·일의 對ASEAN 수출현황/9
2. ASEAN시장에서 한·중·일 수출경합도 분석/12
 - 가. ASEAN 10국에서 한·중·일의 수출경합도/12
 - 나. ASEAN 주요국에서 한·중·일의 수출경합도/13
3. ASEAN시장에서 한·중·일 주요 경합품목/14
4. 한·중·일 주요 수출상품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18

III. 전망과 시사점/23

1. 전망/23
2. 시사점/25

요 약

□ ACFTA 추진배경

- 중국의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ASEAN 역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FTA의 허브가 되려는 의도

□ ACFTA의 내용

- 2002년 골격협약(Framework Agreement), 2003년 의정서(Protocol)을 거쳐 2004년 상품무역협정(Agreement on Trade in Goods)을 통해 완성
- 조기자유화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 일반분야(Normal Track), 민감분야(Sensitive Track)의 3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에 따라 품목별·국별 관세인하계획 수립

□ 한·중·일 수출상품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

- ASEAN에서 한·중·일이 경합하고 있는 품목은 HS코드 84·85류의 기계류, 전기기기
- 한·중·일 경합품목 중 Early Harvest Program대상품목은 없으나 Normal Track품목이 상당수 존재
- 일본보다는 한국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 필요

*부록 : ACFTA 상세 내용/27

I. ACFTA 개요

1. 추진배경

가. 중국 입장

□ 중국의 세계화 전략의 일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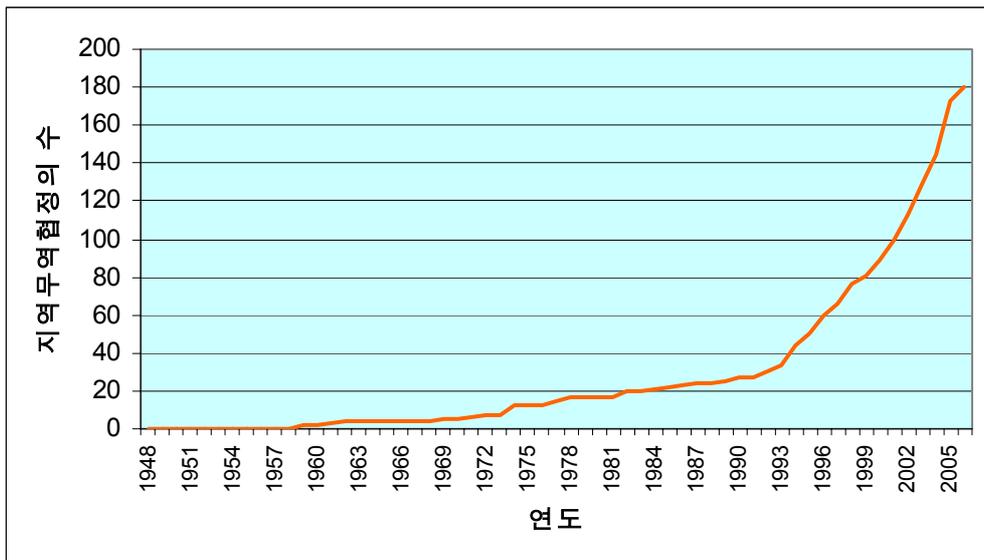
- 중국 세계화 전략의 첫 단계는 APEC 가입¹⁾
 - 1991년 APEC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개선, 서비스·무역 개방, 투자분야의 정책 투명성 제고, 지적재산권보호 강화,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노력
- 이후 WTO 가입을 통해 개방과 개혁정책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통해 성장잠재력 제고 의도
- WTO 가입으로 조성된 국내의 경제제도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FTA를 활용
 - 세계경제로의 통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자유화 및 경제개혁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인식
 - WTO 가입에 따른 시장경제화 및 통상제도의 개선을 통해 통상정책에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

1) 중국의 GATT가입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도되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APEC가입을 중국 세계화 전략의 시발점으로 간주 (참고 : 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과급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년 발간)

□ 전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 흐름에 대응 목적

- 지역무역협정은 GATT 출범 이후부터 1989년 말까지 약 30년 동안 26개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 들어 급증하기 시작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의 연도별 추이>



자료원 : WTO

- 다자체제와 더불어 세계통상질서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책 모색

□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의 주도권 확보

- 한국과 일본이 양국간 FTA 추진을 검토하기 시작한 1998년 말부터 대응전략을 강구하기 시작
- 일본과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의식해 일본이 주도하게 될 한-일 FTA보다는 중국이 주도할수 있는 중-ASEAN FTA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분석됨

□ 국토균형발전전략(서부대개발사업)의 일환

- 동부연안지역과 서부내륙지역간의 경제적 격차 해결 필요
 - 동부연안지역은 경제발전의 기반이 이미 구축되었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EXPO) 개최 등으로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 예상
 - 이에 중국정부는 2000년 초 국무원 서부개발판공실이 「10.5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부대개발정책 본격 추진
- 중국정부는 중앙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서부대개발사업에 투입하고 동시에 동부연안지역에 대한 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조달한다는 입장
 -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중국의 통상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FTA를 통한 무역규범 선진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함

나. ASEAN 입장

□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 ASEAN 국가들은 선진국기업, 특히 일본기업들의 자본 투입과 수출호조로 고도성장을 이룩
- 그러나 이후 동아시아 금융위기, 버블 붕괴 이후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중국경제의 급부상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부진, 경쟁력 약화 등의 어려움을 겪음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중국과의 산업 및 경제협력 강화 모색

□ ASEAN의 대 중국 수출 확대

- 현재 ASEAN 10국²⁾은 중국의 5대 교역상대국 중 하나

<중국의 10대 교역국>

(단위 : 백만불, %)

순위	수출			수입		
	국가명	금액	비중	국가명	금액	비중
1	미국	124973	21.05	일본	94191	16.80
2	홍콩	101126	17.04	대만	64759	11.55
3	일본	73536	12.39	아세안 10	62954	11.23
4	아세안 10	42902	7.23	한국	62165	11.09
5	한국	27809	4.69	미국	44652	7.96
6	독일	23754	4.00	중국	38795	6.92
7	네덜란드	18517	3.12	독일	30158	5.38
8	영국	14975	2.52	러시아	12088	2.16
9	대만	13547	2.28	홍콩	11801	2.10
10	프랑스	9925	1.67	호주	11530	2.06
	총수출	593647	100	총수입	560811	100

주 : 2004년 기준

자료원 : WTA

- 중국의 고성장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 여지는 여전히 크며 FTA를 통한 상호 특혜적 시장 개방으로 중국 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

2)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AFTA의 허브화 전략 일환

- 중국과의 FTA 추진을 계기로 ASEAN은 AFTA의 확대를 적극 모색
 - 중국 외에 일본, CER(호주·뉴질랜드간 FTA), 미국, 인도, EU 등과의 FTA 체결 혹은 경제적 연계 강화를 모색
- AFTA를 FTA허브로 발전시킴으로써 원자재 조달 및 수출환경 측면에서 주변(spoke)지역보다 이점 향유

<참고 : 중국-ASEAN FTA 추진과정>

년도	장소	회의 및 회담명	주요 내용
2000.11	싱가폴	중-ASEAN 정상회담	중국 주룽지 총리, ASEAN과의 FTA 추진 제의
2001.11	브루나이	중-ASEAN 정상회담	양자간 FTA 추진합의, '중-ASEAN 경제협력을 위한 전문가 그룹'이 작성한 보고서 채택
2002.5	중국	중-ASEAN 고위관리회의	FTA 협상일정 논의
2002.9	브루나이	중-ASEAN 통상장관회의	FTA 골격협약안 작성, Early Harvest Program 조치 논의
2002.11	캄보디아	중-ASEAN 정상회담	중-ASEAN FTA 골격협약 서명
2003.10	인도네시아	중-ASEAN 통상장관회의	골격협약 일부 수정(원산지규정, Early Harvest Program 품목 조정 등)
2004.11	라오스	중-ASEAN 정상회의 (통상장관회의)	2005.7.1부터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개시 합의

자료원 : 무역협회 보고서 「중-ASEAN FTA의 주요내용과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 수정

2. ACFTA 개괄

□ 주요 문서

-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hnom Penh, 5 November 2002³⁾
- Protocol to Amend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ali, 6 October 2003⁴⁾
- Agreement on Trade in Goods of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Vientiane, 29 November 2004⁵⁾
 - Annex I. Modality for Tariff Reduction and Elimination for Tariff Lines Placed in the Normal Track
 - Annex II. Modality for Tariff Reduction/Elimination for Tariff Lines Placed in the Sensitive Track
 - Annex III. Rules of Origin for the ASEAN-China Free Trade Area

3) 이하 골격협약(Framework Agreement)이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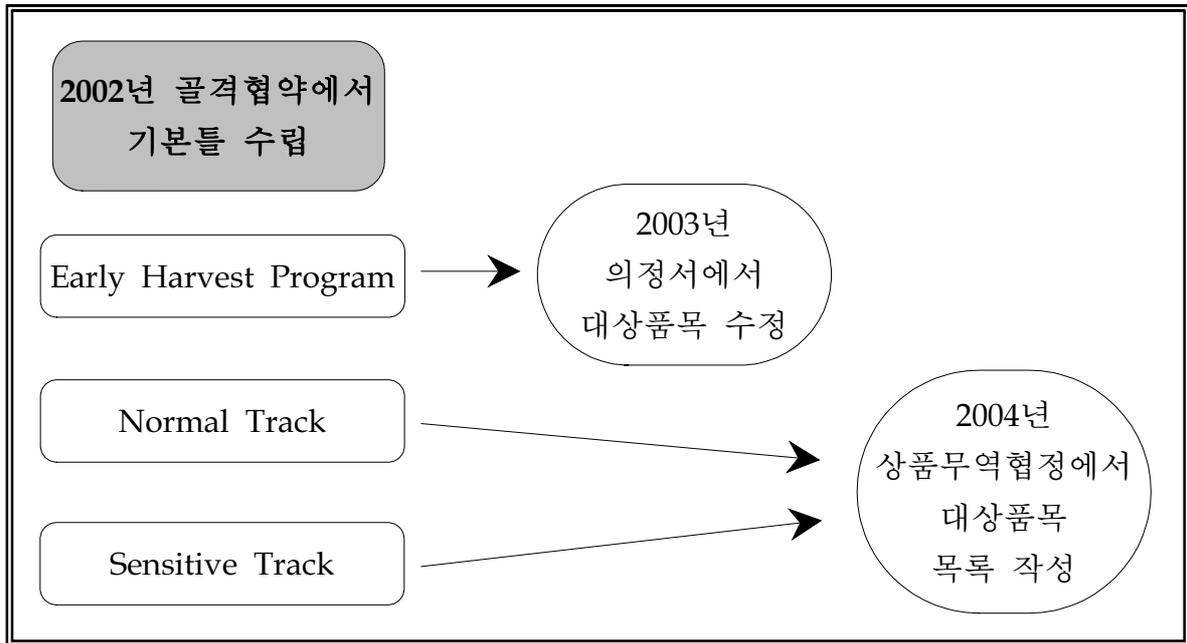
4) 이하 의정서(Protocol)라 함

5) 이하 상품무역협정(Agreement on Trade in Goods)이라 함

□ Early Harvest Program(조기자유화 프로그램), Normal Track (일반분야), Sensitive Track(민감분야)의 3가지로 구성

- 2002년 골격협약에서 기본틀을 수립한 뒤 2003년 의정서, 2004년 상품무역협정에서 수정·보완이 이루어짐

<ACFTA 성립 과정>



□ ACFTA의 체계

- Early Harvest Program, Normal Track, Sensitive Track에 따라 국가군별·품목별로 관세 인하 및 철폐 계획이 상이

- Normal Track, Early Harvest Program 대상품목의 경우 중국적으로 무관세가 되며 Sensitive Track의 경우 무관세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관세가 인하됨

<ACFTA의 체계>

Early Harvest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부터 시행 · HS코드 01~08의 농수산물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철폐
Normal Tr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7월부터 시행 · 공산품을 대상으로 Broadband방식⁶⁾에 의해 관세 인하 · 일반품목과 예외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철폐 · 불가분의 일체(an integral part)로 관세철폐가속화프로그램(Further Tariff Reduction or Elimination) 도입
Sensitive Tr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nsitive List와 Highly Sensitive List로 구성되어 있으며 Normal Track의 예외적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인하

* ACFTA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6) 2003년도 WTO협정상의 MFN관세율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관세율이 인하되어 완료시점에는 관세가 0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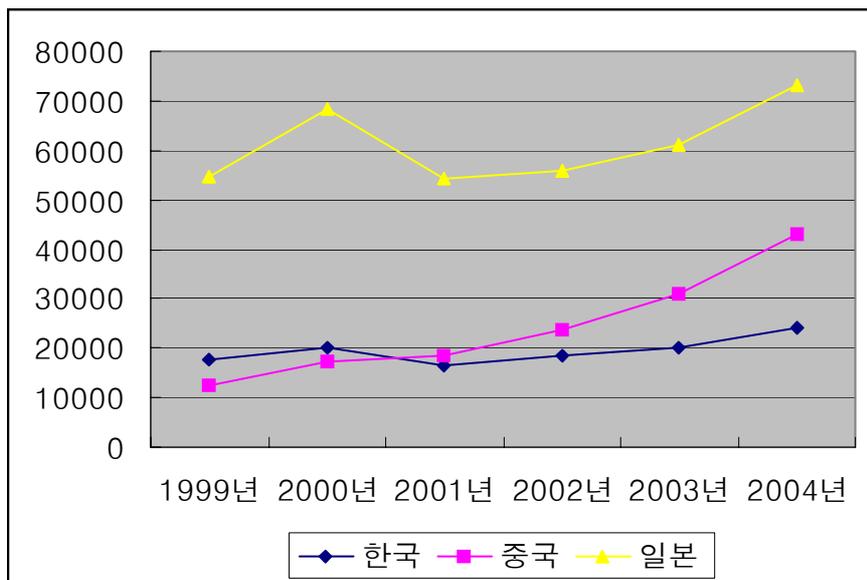
Ⅱ. ACFTA가 ASEAN에서의 한·중·일 주요 수출상품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

1. 한·중·일의 對ASEAN 수출현황

- 2004년까지 일본의 對ASEAN 수출액이 가장 많으며 한국은 2001년 중국에 추월을 허용한 상황

<최근 6년간 한·중·일의 對ASEAN 수출 추이>

(단위 : 백만불)



주 : ASEAN 10국 기준

자료원 : W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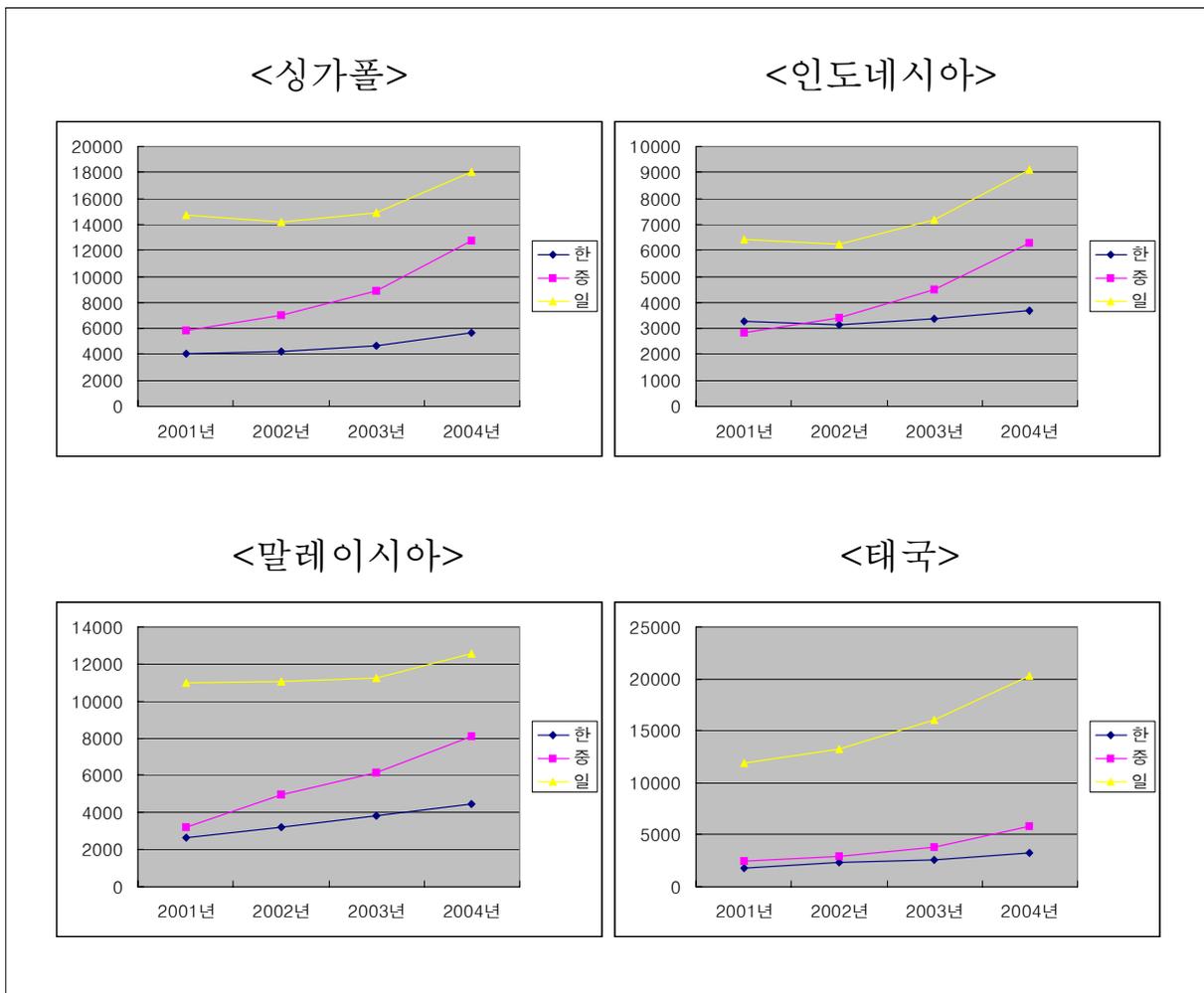
□ 일본은 6개국, 중국은 4개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ASEAN국가는 없음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등에서 한·중·일 3국 중 한국이 최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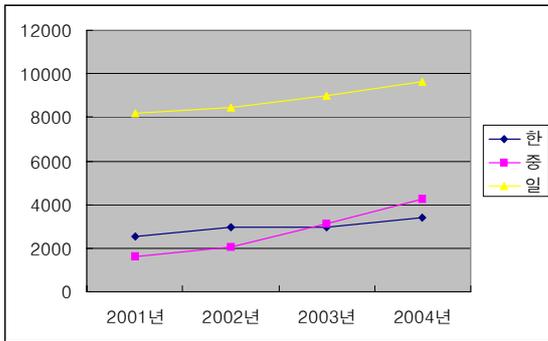
○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국가에서는 한국이 2위를 차지

<한·중·일의 對ASEAN 국별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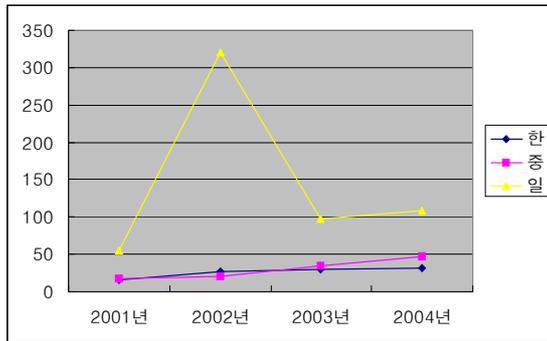
(단위 :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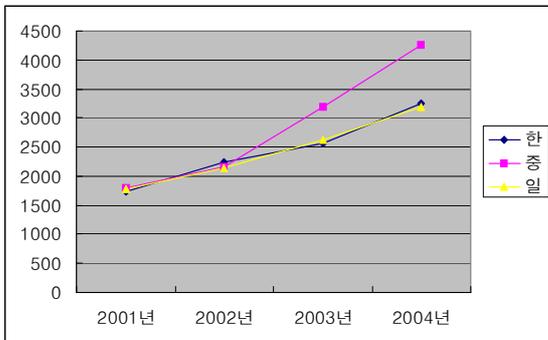
<필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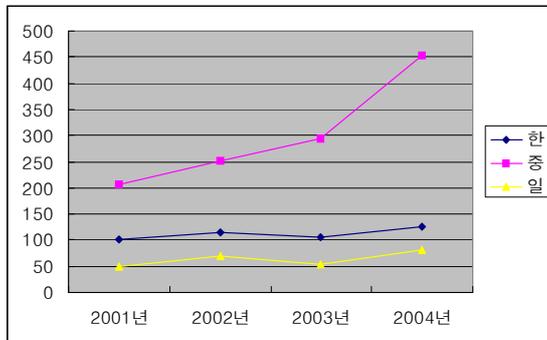
<브루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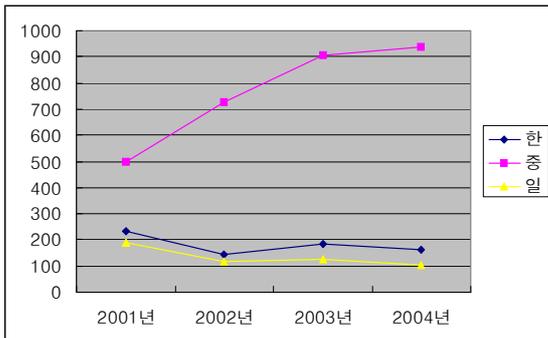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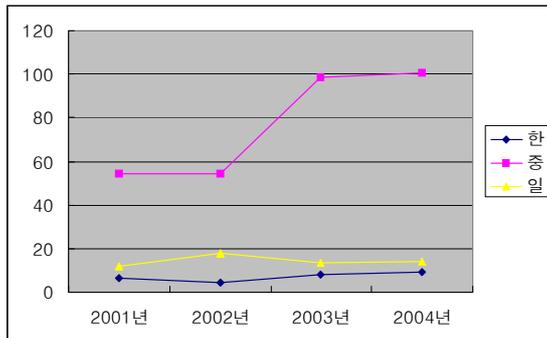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자료원 : WTA

2. ASEAN에서 한·중·일의 수출경합도기 분석

가. ASEAN 10국에서 한·중·일의 수출경합도

□ 중·일보다는 한·중의 수출경합도가 더 큼

<최근 5년간 ASEAN에서의 한·중·일 수출경합도 추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한국-중국	0.6598	0.7016	0.7155	0.6803	0.7633
중국-일본	0.6543	0.6798	0.6770	0.6718	0.7258
*한국-일본	0.7182	0.7153	0.7549	0.7522	0.7422

주 : HS코드 2단위 기준

- 한·일의 수출경합도는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한·중, 중·일간 수출경합도가 크게 증가

7) 수출경합도(ESI : Export Similarity Index)는 양국의 수출상품구조가 유사할수록 경쟁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하에 특정시장에 대한 양국 수출상품구조의 유사성 정도를 계량화한 것

$$ESI_{ab} = \sum \text{MIN} (X_a^i / X_a, X_b^i / X_b)$$

(단, X_a, X_a^i : a국의 총수출액 및 i상품에 대한 수출액)

- 즉 어떤 시장에서 a, b 국가간의 수출경합도지수 ESI_{ab} 는 그 시장에서 a국과 b국의 수출에서 각각 i상품이 차지하는 비중($X_a^i / X_a, X_b^i / X_b$) 중 작은 값을 선택하여 모든 상품에 대하여 그 값을 더한 수치로 정의됨
- a, b 양국의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I상품의 수출비중이 서로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수출경합도지수의 값은 커지게 되는데, ESI_{ab} 가 1의 값에 가까워질수록 양국의 수출구조가 서로 유사함을 의미하며 더욱 경합적이라 할 수 있음
- 수출경합도지수는 품목의 세분화 정도에 따라 그 값이 변할 수 밖에 없는데, 통상 상품 분류가 대분류인 경우 그 값이 크게 나타나며 세분화될수록 그 값이 작아지게 됨
- 따라서 수출경합도지수는 동일한 품목분류 기준하에서 비교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음

- 이는 중국의 수출구조가 한국과 일본에 더욱 유사한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

○ 중·일보다는 한·중의 수출경합도가 더 큰 관계로 ACFTA로 인한 피해 역시 일본보다는 한국에 더 클 전망

나. ASEAN 주요국⁸⁾에서 한·중·일의 수출경합도

□ ASEAN 주요국 역시 ASEAN전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태국의 경우 중·일 경합도가 한·중 경합도보다 높은 것이 특징

<최근 5년간 ASEAN 주요국에서의 한·중·일 수출경합도>

① 말레이시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한국-중국	0.6081	0.6944	0.6799	0.6802	0.7362
중국-일본	0.6353	0.7348	0.6472	0.5959	0.6311
*한국-일본	0.7614	0.7720	0.7756	0.7675	0.7928

② 인도네시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한국-중국	0.6411	0.6289	0.6251	0.5693	0.6304
중국-일본	0.6225	0.5896	0.5758	0.5478	0.6212
*한국-일본	0.5632	0.5263	0.6212	0.6259	0.5893

8) ASEAN 10국 중 싱가포르, 베트남은 무관세, 베트남은 관세자료 미공개, 나머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교역규모가 적은 관계로 제외

③ 태국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한국-중국	0.5562	0.5907	0.7084	0.6910	0.7391
중국-일본	0.6406	0.6893	0.7287	0.7118	0.7502
*한국-일본	0.6575	0.6677	0.7140	0.7520	0.7417

④ 필리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한국-중국	0.6062	0.5915	0.5905	0.6410	0.7229
중국-일본	0.5579	0.5127	0.5260	0.5857	0.6798
*한국-일본	0.6762	0.6863	0.7510	0.6987	0.6700

주 : HS코드 2단위 기준

3. ASEAN시장에서 한·중·일 주요 경합품목

- ASEAN에서 한·중·일 3국이 경합하고 있는 품목은 대개 HS코드 84·85류의 기계류, 전기기기

- 한·중·일 경합품목 선정방법 -

1. 한·중·일의 對ASEAN(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수출품목 정리 (HS 코드 6단위 기준)
2. 수출실적 5백만불 이하품목 제외
3. 이 중 한·중·일 공통품목 추출

<ASEAN 주요국에서의 한·중·일 경합품목>

(단위 : 백만불)

<말레이시아>

HS 코드	품목명	한	중	일
720917	철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코일상 ,냉간압연 ,두께 0.5MM이상 1MM이하)	42.490	9.911	47.875
847330	제 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02.087	1261.320	147.931
847160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동일하우징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85.759	114.227	19.455
847170	기억장치	56.745	107.506	12.048
847989	84798호에서 금속처리용의 것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균질기·유화기와 교반기를 제외한 나머지	24.628	8.345	215.583
841430	냉장설비용의 기체압축기	5.187	13.544	27.688
854221	디지털	494.458	376.171	810.526
853400	인쇄회로	111.302	59.205	129.737
854011	텔레비전용 음극선관 (천연색의 것)	78.063	41.909	21.925
854091	음극선관의 부분품	55.730	60.943	73.836
852990	무선송수신기기 .레이다아 .항행용 무선기 .텔레비전수상기의 기타부분품	51.323	256.223	247.896
850780	기타의 축전지	18.325	53.607	128.063
854229	기타	12.545	39.612	247.684
850490	변압기 .정지형 변화기와 유도자의 부분품	8.455	5.042	12.051
850440	정지형 변환기	7.226	59.727	13.770
870899	자동차용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32.091	27.523	176.463
870829	자동차용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7.766	5.091	153.755

<인도네시아>

HS 코드	품목명	한	중	일
392690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14.205	13.392	21.403
721012	주석을 도금 .도포한 철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두께 0.5MM미만)	46.391	12.065	23.179
720917	철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코일상 ,냉간압연 ,두께 0.5MM이상 1MM이하)	32.030	10.806	72.073
720839	철 .비합금강의 기타 평판압연제품 (코일상 ,열간압연 ,두께 3MM미만)	14.992	8.630	25.999

720838	철의 기타 평판압연제품 (코일상 ,열간압연 ,두께 3 MM이상 4.75MM미만)	12.395	5.462	5.742
722830	기타 합금강의 기타 봉 (열간압연 .열간인발 .압출한것)	9.152	18.823	25.999
847330	제 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31.220	133.751	172.049
84295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31.206	20.664	116.636
848071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고무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23.847	5.273	48.231
843149	테럭 .크레인 .그레이더 .레벨러 .엑스카베이터 .항타기의 부분품	10.803	11.376	78.933
852290	음성재생기기 .음성기록기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의 기타 부분품	163.333	41.033	11.276
85252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85.507	73.614	12.322
853222	알루미늄 전해의 고정식축전기	17.044	7.083	12.503
854091	음극선관의 부분품	16.990	16.701	27.647
850300	부분품 (제 8501호나 제 8502호 기계에 전용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7.451	6.620	85.118
853669	기타	7.334	6.542	7.629
853890	기타 개폐기 .계전기 .퓨즈 .자동차단기 .배전반 .자동제어반등의 부분품	5.335	9.920	153.975
870899	자동차용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17.774	21.614	376.634

<태국>

HS 코드	품목명	한	중	일
722830	기타 합금강의 기타 봉 (열간압연 .열간인발 .압출한것)	11.570	25.309	46.019
720838	철의 기타 평판압연제품 (코일상 ,열간압연 ,두께 3 MM이상 4.75MM미만)	6.929	22.554	215.409
720839	철 .비합금강의 기타 평판압연제품 (코일상 ,열간압연 ,두께 3MM미만)	6.438	18.541	279.351
847160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동일하우징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34.387	75.222	40.926
848071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고무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21.182	5.347	177.569
847330	제 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16.862	520.809	339.628
841430	냉장설비용의 기체압축기	14.635	18.889	75.939
84295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13.107	30.363	75.817
843149	테럭 .크레인 .그레이더 .레벨러 .엑스카베이터 .항타기의 부분품	12.382	5.442	25.325
841490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압축기 .팬 .송풍기 등의 부분품	11.791	7.902	30.730

841590	공기조절기의 부분품	10.717	18.574	59.356
848180	기타의 기기	9.841	14.772	81.695
847710	사출성형기	6.905	6.920	116.721
847130	휴대용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이하의 것으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이쁜 것에 한함)	5.470	62.230	15.551
841370	기타의 원심펌프	5.295	5.365	22.053
85252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331.454	227.419	27.506
852990	무선송수신기기 .레이다아 .항행용 무선기 .텔레비전수상기의 기타부분품	116.201	52.755	276.520
854221	디지털	88.265	40.959	1250.300
852812	천연색의 것	20.514	13.899	8.025
853400	인쇄회로	18.793	23.546	168.154
854229	기타	17.463	11.121	520.341
851690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의 부분품	16.389	5.487	10.596
854091	음극선관의 부분품	11.465	31.786	37.134
850300	부분품 (제 8501호나 제 8502호 기계에 전용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11.237	13.113	122.693
850490	변압기 .정지형 변화기와 유도자의 부분품	8.143	13.611	14.833
852540	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 · 기타 비데오 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털카메라	7.026	6.549	101.105
850140	기타 단상의 교류전동기	6.875	10.745	10.150
852290	음성재생기기 .음성기록기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의 기타 부분품	5.436	40.000	50.569
854190	반도체디바이스 ,광광선반도체디바이스 ,발광다이오드 및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의 부분품	5.122	6.533	36.082

<필리핀>

HS 코드	품목명	한	중	일
392690	플라스틱체의 기타 제품	6.692	14.318	37.267
720839	철 .비합금강의 기타 평판압연제품 (코일상 ,열간압연 ,두께 3MM미만)	7.426	16.908	21.568
847330	제 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165.449	92.693	847.755
847170	기억장치	13.856	17.619	24.709
841430	냉장설비용의 기체압축기	8.478	7.316	5.209
854221	디지털	1035.800	692.756	682.452
85252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207.558	111.112	5.299
853400	인쇄회로	48.543	14.492	237.745
852990	무선송수신기기 .레이다아 .항행용 무선기 .텔레비전수상기의 기타부분품	32.485	24.975	233.822

854229	기타	29.812	14.429	418.061
852812	천연색의 것	18.022	10.230	7.671
853224	세라믹유전체의 고정식축전기 (다층)	5.936	7.697	26.333
852290	음성재생기기 .음성기록기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의 기타 부분품	5.921	75.001	20.956
870899	자동차용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8.439	17.675	151.565

주 : 한·중·일 관련 수치는 2004년 해당국가로의 수출액

자료원 : WTA

4. 한·중·일 주요 수출상품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

□ ACFTA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관세를 부담⁹⁾하나 중국은 관세를 부담하지 않는 품목들이 발생¹⁰⁾

○ 한국과 일본이 부담하는 관세가 높을수록 큰 피해 예상

- 그러나 이 경우에도 Sensitive Track품목의 경우에는 중국 역시 관세를 상당기간 부담하게 되어 있어 한국과 일본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가 예상됨

○ 2003년 기준 최혜국 관세율이 0인 품목들은 한국과 일본 역시 무관세 혜택을 누리므로 ACFTA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을 전망

9) 2003년 기준 최혜국 관세율을 부담

10) 이 경우 중국은 「Normal Track」, 「Normal Track 예외」 품목의 관세 인하·철폐 계획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한·중·일의 주요 경합품목이 대부분 HS코드 84·85류의 기계류·전기기기인 관계로 Early Harvest Program대상품목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ACFTA에 따른 ASEAN 주요국¹¹⁾에서의 한국·일본 피해>

(단위 : %)

<말레이시아>

	HS 코드	비고	한·일이 부담하는 관세율	말레이시아의 대 중국 관세 인하 계획							
			MFN(2003)	2005	2007	2009	2010	2012	2015	2018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8473.30.000		0	0	0	0	0	0	0	0	0
	8471.60.000		0	0	0	0	0	0	0	0	0
	8471.70.000		0	0	0	0	0	0	0	0	0
	8479.89.900		0	0	0	0	0	0	0	0	0
	8414.30.000		0	0	0	0	0	0	0	0	0
	8534.00.000		0	0	0	0	0	0	0	0	0
	8540.11.000		0	0	0	0	0	0	0	0	0
	8540.91.000		0	0	0	0	0	0	0	0	0
	8529.90.200		0	0	0	0	0	0	0	0	0
	8529.90.900		0	0	0	0	0	0	0	0	0
	8507.80.100		0	0	0	0	0	0	0	0	0
	8504.90.000		0	0	0	0	0	0	0	0	0
	8708.99.140		0	0	0	0	0	0	0	0	0
	8708.99.210		0	0	0	0	0	0	0	0	0
	8708.99.940		0	0	0	0	0	0	0	0	0
8708.29.100		0	0	0	0	0	0	0	0	0	
피해 예상 품목	8479.89.100		5	5	5	0	0	0	0	0	0
	8708.99.111		5	5	5	0	0	0	0	0	0
	8708.99.131		5	5	5	0	0	0	0	0	0
	8708.99.290		5	5	5	0	0	0	0	0	0
	8708.99.112		10	10	8	5	0	0	0	0	0
	8708.99.132		10	10	8	5	0	0	0	0	0
	8529.90.100		20	20	12	5	0	0	0	0	0
	8507.80.900		20	20	12	5	0	0	0	0	0
	8708.99.113		20	20	12	5	0	0	0	0	0
	8708.99.133		20	20	12	5	0	0	0	0	0
	8708.29.900		25	20	12	5	0	0	0	0	0
	8708.99.114		30	20	12	5	0	0	0	0	0
	8708.99.134		30	20	12	5	0	0	0	0	0
	8708.99.910		30	20	12	5	0	0	0	0	0
	8708.99.920		30	20	12	5	0	0	0	0	0
↓ 피해규모 큼	8708.99.930		30	20	12	5	0	0	0	0	0
	8708.99.990		30	20	12	5	0	0	0	0	0
	8708.99.115		40	20	12	5	0	0	0	0	0
	8708.99.135		40	20	12	5	0	0	0	0	0
	8708.99.121		42	20	12	5	0	0	0	0	0

11) 필리핀의 경우 Normal Track 예외품목을 2008년 이후에 결정하기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관세 인하·철폐 계획 도출 불가

	8708.99.122		60	20	12	5	0	0	0	0
	8708.99.123		70	20	12	5	0	0	0	0
	8708.99.124		80	20	12	5	0	0	0	0

<인도네시아>

	HS 코드	비고	한·일이 부담 하는 관세율	인도네시아의 대 중국 관세 인하 계획							
			MFN(2003)	2005	2007	2009	2010	2012	2015	2018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 는 품목	8473.30.100		0	0	0	0	0	0	0	0	0
	8473.30.900		0	0	0	0	0	0	0	0	0
	8480.71.000		0	0	0	0	0	0	0	0	0
	8431.49.100		0	0	0	0	0	0	0	0	0
	8431.49.200		0	0	0	0	0	0	0	0	0
	8431.49.300		0	0	0	0	0	0	0	0	0
	8522.90.100		0	0	0	0	0	0	0	0	0
	8522.90.200		0	0	0	0	0	0	0	0	0
	8525.20.100		0	0	0	0	0	0	0	0	0
	8525.20.910		0	0	0	0	0	0	0	0	0
	8532.22.000		0	0	0	0	0	0	0	0	0
	8540.91.000		0	0	0	0	0	0	0	0	0
	8503.00.100		0	0	0	0	0	0	0	0	0
	8503.00.900		0	0	0	0	0	0	0	0	0
	8536.69.100		0	0	0	0	0	0	0	0	0
피해 예상 품목	3926.90.200	Sensitive	5						20 이하	20 이하	0~5
	3926.90.300	Sensitive	10						20 이하	20 이하	0~5
	7209.17.100	Sensitive	10						20 이하	20 이하	0~5
	7209.17.900	Sensitive	10						20 이하	20 이하	0~5
	7210.12.100	Sensitive	15						20 이하	20 이하	0~5
	7210.12.900	Sensitive	15						20 이하	20 이하	0~5
	8708.99.100	Sensitive	15						20 이하	20 이하	0~5
	8708.99.900	Sensitive	15						20 이하	20 이하	0~5
	3926.90.900	Sensitive	20						20 이하	20 이하	0~5
	7208.39.000	Normal 예외	5	5	5	5	5	0	0	0	0
	7208.38.000	Normal 예외	5	5	5	5	5	0	0	0	0
	7228.30.000		5	5	5	0	0	0	0	0	0
	8522.90.910		5	5	5	0	0	0	0	0	0
	8522.90.990		5	5	5	0	0	0	0	0	0
	8538.90.000		5	5	5	0	0	0	0	0	0
8429.52.100		10	10	8	5	0	0	0	0	0	
8429.52.900		10	10	8	5	0	0	0	0	0	
8525.20.990		10	10	8	5	0	0	0	0	0	
8536.69.900		10	10	8	5	0	0	0	0	0	

↓
피해규모
크

<태국>

	HS 코드	비고	한·일이 부담 하는 관세율	태국의 대 중국 관세 인하 계획							
			MFN(2003)	2005	2007	2009	2010	2012	2015	2018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 는 품목	8471.60.001		0	0	0	0	0	0	0	0	0
	8471.60.002		0	0	0	0	0	0	0	0	0
	8471.60.009		0	0	0	0	0	0	0	0	0
	8473.30.000		0	0	0	0	0	0	0	0	0
	8471.30.000		0	0	0	0	0	0	0	0	0
	8525.20.001		0	0	0	0	0	0	0	0	0
	8525.20.009		0	0	0	0	0	0	0	0	0
	8542.21.000		0	0	0	0	0	0	0	0	0
	8542.29.000		0	0	0	0	0	0	0	0	0
	8540.91.010		0	0	0	0	0	0	0	0	0
	8540.91.090		0	0	0	0	0	0	0	0	0
	8541.90.010		0	0	0	0	0	0	0	0	0
8541.90.090		0	0	0	0	0	0	0	0	0	
피해 예상 품목	8413.70.010	Sensitive	3					20 이하	20 이하	0~5	
	8413.70.090	Sensitive	3					20 이하	20 이하	0~5	
	8501.40.001	Sensitive	3					20 이하	20 이하	0~5	
	8501.40.002	Sensitive	3					20 이하	20 이하	0~5	
	8501.40.003	Sensitive	3					20 이하	20 이하	0~5	
	7208.38.011	Sensitive	10					20 이하	20 이하	0~5	
	7208.38.019	Sensitive	10					20 이하	20 이하	0~5	
	7208.38.091	Sensitive	10					20 이하	20 이하	0~5	
	7208.38.092	Sensitive	10					20 이하	20 이하	0~5	
	7208.38.099	Sensitive	10					20 이하	20 이하	0~5	
	7208.39.011	Sensitive	10					20 이하	20 이하	0~5	
	7208.39.019	Sensitive	10					20 이하	20 이하	0~5	
	7208.39.021	Sensitive	10					20 이하	20 이하	0~5	
	7208.39.029	Sensitive	10					20 이하	20 이하	0~5	
	7208.39.091	Sensitive	10					20 이하	20 이하	0~5	
	7208.39.099	Sensitive	10					20 이하	20 이하	0~5	
	8414.30.010	Sensitive	20					20 이하	20 이하	0~5	
	8414.30.020	Sensitive	20					20 이하	20 이하	0~5	
	8414.30.090	Sensitive	20					20 이하	20 이하	0~5	
	8529.90.210	Sensitive	20					20 이하	20 이하	0~5	
	8529.90.290	Sensitive	20					20 이하	20 이하	0~5	
	8528.12.000	Sensitive	20					20 이하	20 이하	0~5	
	8481.80.010		3	3	3	0	0	0	0	0	
	8481.80.091		3	3	3	0	0	0	0	0	
8481.80.099		3	3	3	0	0	0	0	0		
8529.90.100		3	3	3	0	0	0	0	0		
8529.90.910		3	3	3	0	0	0	0	0		
8529.90.990		3	3	3	0	0	0	0	0		

	8504.90.010		3	3	3	0	0	0	0	0
	8504.90.090		3	3	3	0	0	0	0	0
	8525.40.000		3	3	3	0	0	0	0	0
	8480.71.000		5	5	5	0	0	0	0	0
	8429.52.001		5	5	5	0	0	0	0	0
	8429.52.009		5	5	5	0	0	0	0	0
	8431.49.001		5	5	5	0	0	0	0	0
	8431.49.009		5	5	5	0	0	0	0	0
	8477.10.001		5	5	5	0	0	0	0	0
	8477.10.009		5	5	5	0	0	0	0	0
	8534.00.000		7.78	5	5	0	0	0	0	0
	7228.30.010		10	10	8	5	0	0	0	0
	7228.30.090		10	10	8	5	0	0	0	0
	8503.00.010		10	10	8	5	0	0	0	0
	8503.00.020		10	10	8	5	0	0	0	0
	8503.00.090		10	10	8	5	0	0	0	0
	8414.90.011		20	20	12	5	0	0	0	0
	8414.90.019		20	20	12	5	0	0	0	0
	8414.90.091		20	20	12	5	0	0	0	0
	8414.90.099		20	20	12	5	0	0	0	0
	8415.90.010		20	20	12	5	0	0	0	0
	8415.90.090		20	20	12	5	0	0	0	0
	8516.90.001		20	20	12	5	0	0	0	0
	8516.90.009		20	20	12	5	0	0	0	0
	8522.90.010		30	20	12	5	0	0	0	0
	8522.90.091		30	20	12	5	0	0	0	0
	8522.90.092		30	20	12	5	0	0	0	0
	8522.90.093		30	20	12	5	0	0	0	0
	8522.90.099		30	20	12	5	0	0	0	0

▽
피해규모
크

주: Highly Sensitive : Highly Sensitive List 품목

Sensitive : Sensitive List 품목

Normal 예외 : Normal Track 예외품목

MFN(2003) : 2003년 기준 최혜국 관세율

CEPT(2003) : 2003년 기준 ASEAN 역내 특혜관세율

일부 품목 누락

한국과 ASEAN간 HS코드 불일치로 정확한 품목명 해석은 불가능

자료원 : <http://tri.kita.net>

Ⅲ. 전망과 시사점

1. 전망

□ ASEAN에서 중국의 우위 예상

- 한·중·일 경합품목 중 상당수가 Normal Track 품목으로서 중-ASEAN간 무관세 예정
 - Sensitive Track의 경우에도 관세인하는 이루어지므로 Sensitive Track 품목 역시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됨
-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최혜국 관세율¹²⁾을 적용받게 되므로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게 될 중국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

□ 일본보다는 한국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

- ASEAN시장에서 한·중 수출경합도가 중·일 수출경합도보다 높음
- ACFTA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대 ASEAN 수출은 불리해지나 중국 진출 한·일 기업들은 오히려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12) 표 「ACFTA에 따른 ASEAN 주요국 관세 인하 및 철폐 계획」 중 MFN(2003) 항목 참조

- 현지 진출기업의 수나 투자규모 면에서 일본이 단연 앞서고 있어 한국에 비해 피해규모가 작을 것으로 예상
- ASEAN 시장만이 아닌 전세계 시장에서도 한국과 일본 제품의 수출경쟁력 저하 가능
 - ACFTA로 인해 중국과 ASEAN의 수출경쟁력 제고
 - 중국의 경우 WTO 가입으로 본격화된 통상환경의 개선과 국내 산업구조 조정 가속화
 - ASEAN 역시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와 산업구조 조정 등으로 인해 국제경쟁력 제고
-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 움직임 활발해질 전망
 - ACFTA는 중-ASEAN 양자간 FTA 이상의 의미
 - 향후 세계 제 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중국이 주도하는 FTA라는 상징성
 - AFTA가 역외 국가와의 FTA를 통해 확대
 - 동아시아내 다른 FTA 체결을 촉진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형성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2. 시사점

□ 향후 불리해질 대 ASEAN 수출여건에 대비 필요

- 중국과 ASEAN이 상호 특혜관세를 주고받음에 따라 불리해질 가격여건에 대비해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 필요

- 연구 개발 투자 확대, 노사관계개선, 투자제한 완화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생산비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 강화

- 중국과 ASEAN 현지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

- AC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현지 진출 기업들도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투자 확대 모색 필요

- 중국 및 ASEAN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불리해진 수출여건 상쇄 노력 필요

□ ASEAN과의 FTA체결 적극 추진 필요

- ACFTA로 인해 중국이 무관세혜택을 누릴 경우 ASEAN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상실 우려

- 과거에도 AFTA에 따른 ASEAN 역내국간 관세인하조치로 인해 對말레이시아 H형강, 對베트남 종이류 등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악화된 사례가 존재

- 일본-ASEAN FTA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역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
 - ASEAN국가들의 주요 경제정책 목표 중 하나는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등 주요국과의 FTA체결 확대
 - ASEAN 각국은 ACFTA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본과 FTA를 추진 중이며 이를 발판으로 동아시아 FTA의 허브로 부상 의도
 - 현재 진행 중인 ASEAN과의 FTA 협상 조기 타결 필요

부록 : ACFTA 상세 내용

□ Early Harvest Program : 2004년부터

○ 골격협약 제 6조¹³⁾에서 도입

- HS 코드 01~08의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조기 관세인하

<Early Harvest Program에 속하는 농수산물>

HS코드	품목명
01	산동물
02	육, 식용설육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5	기타 동물성 생산품
06	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07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 HS 코드 01~08의 농수산물 중 예외품목 목록은 국별로 골격협약 부속서 1에 기재
- HS 코드 01~08에 속하지 않는 품목 중 Early Harvest Program 포함 품목은 국별로 골격협약 부속서 2에 기재

○ Early Harvest Program 대상품목을 3개 군으로 나누어 「중국과 ASEAN 6개국¹⁴⁾」, 「ASEAN 후발국」 별로 관세 인하 프로그램 진행

13) Article 6 "Early Harvest"

14)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Early Harvest Program 대상품목군 분류>

품목군	중국과 ASEAN 6개국	ASEAN 후발국
1	관세율 ¹⁵⁾ 15%초과 품목	관세율 30%이상 품목
2	관세율 5%이상 15%이하 품목	관세율 15%이상 30%미만 품목
3	관세율 5%미만 품목	관세율 15%미만 품목

<중국과 ASEAN 6개국의 관세인하계획>

품목군	2004.1.1까지	2005.1.1까지	2006.1.1까지
1	10%	5%	0%
2	5%	0%	0%
3	0%	0%	0%

<ASEAN 후발국의 관세인하계획>

① 품목군 1

국가	2004.1.1까지	2005.1.1까지	2006.1.1까지	2007.1.1까지	2008.1.1까지	2009.1.1까지	2010.1.1까지
베트남	20%	15%	10%	5%	0%	0%	0%
라오스	-	-	20%	14%	8%	0%	0%
미얀마	-	-	20%	14%	8%	0%	0%
캄보디아	-	-	20%	15%	10%	5%	0%

② 품목군 2

국가	2004.1.1까지	2005.1.1까지	2006.1.1까지	2007.1.1까지	2008.1.1까지	2009.1.1까지	2010.1.1까지
베트남	10%	10%	5%	5%	0%	0%	0%
라오스	-	-	10%	10%	5%	0%	0%
미얀마	-	-	10%	10%	5%	0%	0%
캄보디아	-	-	10%	10%	5%	5%	0%

③ 품목군 3

국가	2004.1.1까지	2005.1.1까지	2006.1.1까지	2007.1.1까지	2008.1.1까지	2009.1.1까지	2010.1.1까지
베트남	5%	5%	0~5%	0~5%	0%	0%	0%
라오스	-	-	5%	5%	0~5%	0%	0%
미얀마	-	-	5%	5%	0~5%	0%	0%
캄보디아	-	-	5%	5%	0~5%	0~5%	0%

15) 관세율은 2003년도 WTO협정상의 MFN(최혜국) 관세율

- 이후 의정서에서 Early Harvest Program 대상 품목, 예외 품목 목록 수정·보완

□ Normal Track

- Broadband 방식을 적용하여 해당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며 구체적인 관세인하계획은 국가군별로 상이

① 중국과 ASEAN 6개국

2003년 7월 실행관세율	특혜관세율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			
	2005*	2007	2009	2010
$X \geq 20\%$	20	12	5	0
$15\% \leq X < 20\%$	15	8	5	0
$10\% \leq X < 15\%$	10	8	5	0
$5\% < X < 10\%$	5	5	0	0
$X \leq 5\%$	현 관세율 유지		0	0

*2005년은 7월 1일부터 시행

② 베트남

2003년 7월 실행관세율	특혜관세율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5
$X \geq 60\%$	60	50	40	30	25	15	10	0
$45\% \leq X < 60\%$	40	35	35	30	25	15	10	0
$35\% \leq X < 45\%$	35	30	30	25	20	15	5	0
$30\% \leq X < 35\%$	30	25	25	20	17	10	5	0
$25\% \leq X < 30\%$	25	20	20	15	15	10	5	0
$20\% \leq X < 25\%$	20	20	15	15	15	10	0~5	0
$15\% \leq X < 20\%$	15	15	10	10	10	5	0~5	0
$10\% \leq X < 15\%$	10	10	10	10	8	5	0~5	0
$7\% \leq X < 10\%$	7	7	7	7	5	5	0~5	0
$5\% \leq X < 7\%$	5	5	5	5	5	5	0~5	0
$X < 5\%$	현 관세율 유지							0

*2005년은 7월 1일부터 시행

③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2003년 7월 실행관세율	특혜관세율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5
$X \geq 60\%$	60	50	40	30	25	15	10	0
$45\% \leq X < 60\%$	40	35	35	30	25	15	10	0
$35\% \leq X < 45\%$	35	35	30	30	20	15	5	0
$30\% \leq X < 35\%$	30	25	25	20	20	10	5	0
$25\% \leq X < 30\%$	25	25	25	20	20	10	5	0
$20\% \leq X < 25\%$	20	20	15	15	15	10	0~5	0
$15\% \leq X < 20\%$	15	15	15	15	15	5	0~5	0
$10\% \leq X < 15\%$	10	10	10	10	8	5	0~5	0
$7\% \leq X < 10\%$	7**	7**	7**	7**	7**	5	0~5	0
$5\% \leq X < 7\%$	5	5	5	5	5	5	0~5	0
$X < 5\%$	현 관세율 유지							0

*2005년은 7월 1일부터 시행

**미얀마는 2010년까지 7.5%이하로만 유지하도록 양허

- 상기 계획의 불가분의 일체(an integral part)로서 관세철폐 가속화계획(Further Tariff Reduction or Elimination)을 도입해 관세의 조기 철폐를 도모¹⁶⁾

① 중국과 ASEAN 6개국

- 2005년 7월 1일까지 Normal Track 품목 중 최소한 40%에 대해 관세율을 0~5%로 인하
- 2007년 1월 1일까지 Normal Track 품목 중 최소한 60%에 대해 관세율을 0~5%로 인하

16)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1의 6절

- 2010년 1월 1일까지 Normal Track 품목의 관세를 철폐, 단 150개 이하의 항목¹⁷⁾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까지 철폐 유예 가능 → Normal Track 예외 품목
- 2012년 1월 1일까지는 Normal Track 품목의 관세 철폐

② ASEAN 후발국

- Normal Track 품목 중 최소한 50%에 대해 관세율을 0~5%로 인하 (베트남은 2009년 1월 1일, 라오스·미얀마는 2010년 1월 1일, 캄보디아는 2012년 1월 1일까지)
 - Normal Track 품목 중 최소한 40%에 대해 2013년 1월 1일까지 관세 철폐(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베트남의 경우 2013년 1월 1일을 기한으로 관세를 철폐시킬 Normal Track 품목의 비중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결정
 - 2015년 1월 1일까지 Normal Track 품목의 관세를 철폐, 단 250개 이하의 항목¹⁸⁾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까지 철폐 유예 가능 → Normal Track 예외 품목
 - 2018년 1월 1일까지는 Normal Track 품목의 관세 철폐
- Normal Track 예외품목 목록은 국별로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1에 기재

17) HS 코드 6단위 기준

18) HS 코드 6단위 기준

□ Sensitive Track

- 국별로 일정한 한도 이내에서 Sensitive Track 품목을 정할 수 있음
 - 중국과 ASEAN 6개국
HS 6단위 기준 400개 이내 품목이면서 총수입액의 10%이내¹⁹⁾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HS 6단위 기준 500개 품목 이내
 - 베트남
HS 6단위 기준 500개 품목 이내, 총수입액 기준 한도는 2004년 12 31일까지 결정
- Sensitive Track은 다시 Sensitive List와 Highly Sensitive List로 분류되며 국별로 일정한 한도 이내에서 Highly Sensitive List 작성
 - Sensitive List품목은 Normal Track품목에 비해 관세인하기간을 5~10년까지 연장하되 Highly Sensitive List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인하를 하는 것이 특징
 - 품목별로 보면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동차 등 기존의 고관세 공산품을 Sensitive Track으로 분류

19) 2001년 기준

<ACFTA Sensitive Track 현황>

(단위 : 개수)

구분	Sensitive List			Highly Sensitive List	
	농수산물 (01-24류)	공산품 (25-97류)	총계 (HS 6단위)	품목수	주요 품목
중국	42	219	261	100	종이제품, 위성수신기, 액정 TV, PDP TV, 자동차
인도네시아	25	374	399	50	신발, 주방용품, 자동차
말레이시아	22	346	368	96	도자기, 유리제품, 철강, 자동차
태국	59	283	342	100	건사, 주방용품, 백미러, 자동차
필리핀	61	283	344	77	플라스틱, 유리제품, 자동차
싱가폴	2	0	2	1	맥주
브루나이	0	100	100	34	자동차

주 : HS 6단위 기준

자료원 : 산업자원부 및 ASEAN 사무국

- 중국과 ASEAN 6개국
Sensitive Track 품목 중 40%이내 또는 HS 6단위 기준 100개 품목 이내 중 적은 수치에 따름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Sensitive Track 품목 중 40%이내 또는 HS 6단위 기준 150개 품목 이내 중 적은 수치에 따름
- 베트남
2004년 12월 31일까지 결정

○ Sensitive List 품목 관세 인하 계획

- 중국과 ASEAN 6개국
2012년 1월 1일까지 Sensitive List 품목의 관세를 20%로 인하, 2018년 1월 1일까지는 0~5%로 인하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2015년 1월 1일까지 Sensitive List 품목의 관세를 20%로 인하, 2020년 1월 1일까지는 0~5%로 인하
- 베트남
2015년 1월 1일까지 Sensitive 품목의 관세를 인하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인하폭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결정, 2020년 1월 1일까지는 0~5%로 인하

○ Highly Sensitive List 품목 관세 인하 계획

- 중국과 ASEAN 6개국
2015년 1월 1일까지 Highly Sensitive List 품목의 관세를 50%로 인하
- ASEAN 후발국
2018년 1월 1일까지 Highly Sensitive List 품목의 관세를 50%로 인하

○ Sensitive List와 Highly Sensitive List 품목들은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2의 Appendix 1과 Appendix 2에 각각 기재